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5. 9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폐기물의 수집·운반단계에서부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혼합 처리를 예방하고자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에 따라 관련조항 신설 및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 조항 신설(안 제6조의3)
- 나. 쓰레기봉투의 용도·색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9조제1항, 제2항, 제4항)
- 다.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기준 명시(안 제11조제1항, 제2항)
- 라.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 신설
(안 제1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, 제1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7조
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
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감량의무사업장 쓰레기종량제 추진계획”
(부산광역시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4. 16 ~ 5. 6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3(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)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 전용차량은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신설한다.

제9조(쓰레기봉투의 용도·색상 등)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, 사업장용봉투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

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을,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에는 벽돌, 블록,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, 공공용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.

④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, 사업장용봉투는 녹색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흰색,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일반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(이하 “판매소”라 한다)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업자가

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.

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사용대상자는 일반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6조의3 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수입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(생략) 제6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) (생략) <신 설></p>	<p>제6조(폐기물의 배출방법)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(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등)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3(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)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·운반 전용차량은 “사업장생활계폐기물”을 표시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</p>
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용도 등)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.</p>	<p>제9조(쓰레기봉투의 용도·색상 등) ① -----일반용봉투, 사업장용봉투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-----.</p>
<p>②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, 공공용봉투에는 가로 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.</p>	<p>② -----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을, 사업장용봉투에는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, 소규모건설폐기물 전용봉투에는 벽돌, 블록, 콘크리트 등 건설 폐기물을, -----.</p>
<p>③ (생략) <신 설 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 ④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, 사업장용봉투는 녹색, 소규모건설폐기물전용봉투는 흰색,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.</p>
<p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1조(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) ① 일반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 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(이하 "판매소"라 한다)를 통하여 공급하고 사업장용봉투는 제12조제1항의 폐기물 수집·운반대행업자가 공급하며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폐기물수집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~ ② (생략) <신 설></p>	<p>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봉투 및 소규모 건설폐기물전용봉투를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.</p> <p>제13조(폐기물수집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6조의3 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 사업장용 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및 사업장용봉투 제작설비와 조달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수입으로 한다.</p>

『 관계 법령 』

「 폐기물관리법 」

제17조(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) ①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

(이하 "사업장폐기물배출자"라 한다)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- 1.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- 2. 생산 공정(工程)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,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.
- 3.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·운반·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7.8.3>

제18조(사업장폐기물의 처리)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,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,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 또는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7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·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·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

다만,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8.3>